

함께하는 FTA

May 2015 vol. 36



커버스토리: 중남미 FTA 어디까지 왔나?

차이나데스크, YES FTA 차이나센터 탐방

중국 무역인증 및 지적재산권 제도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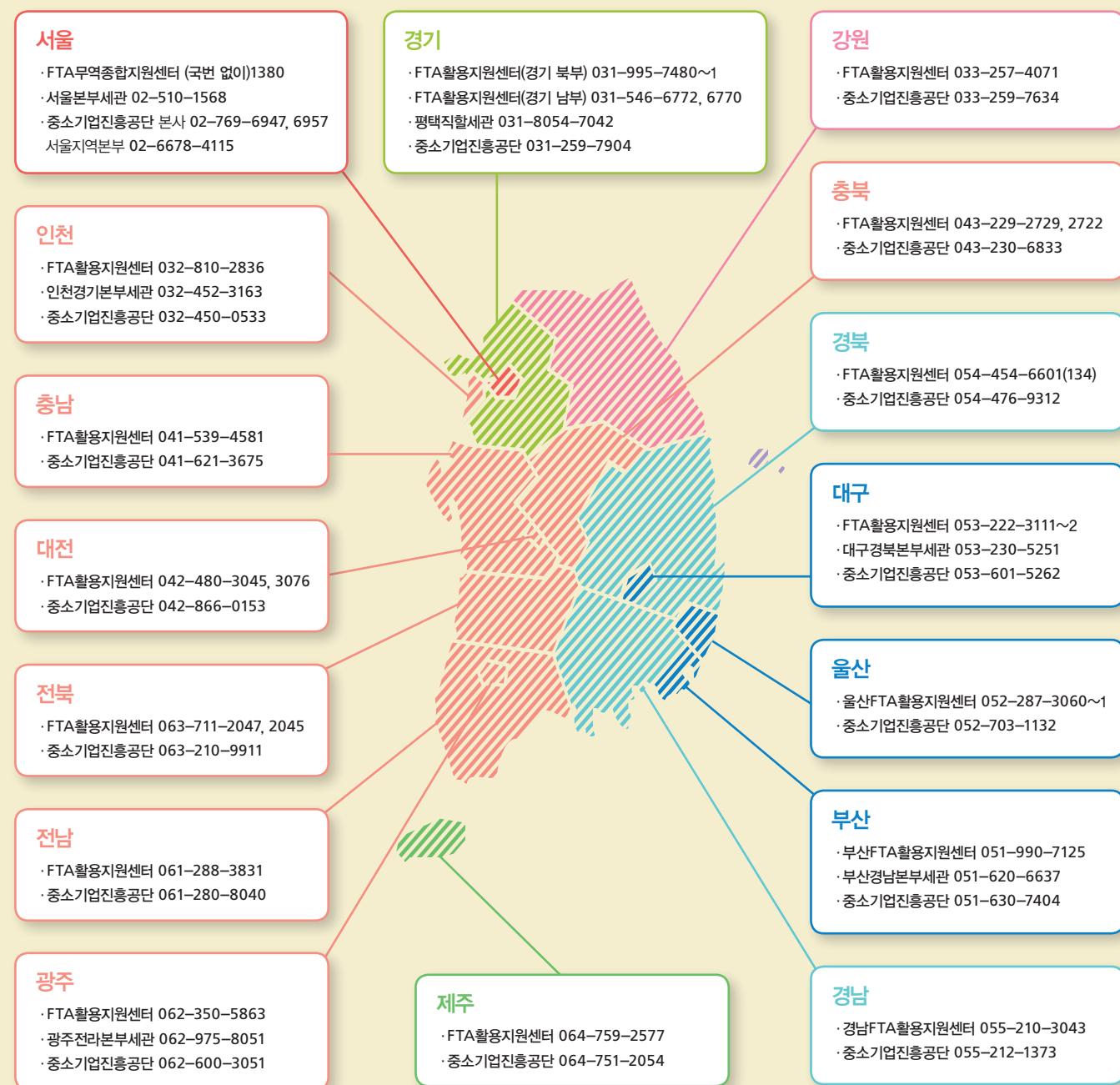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FTA People

글 김보람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중남미와의 FTA 네트워크,
준비된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대학원생

지난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와 한·에콰도르 FTA 추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FTA를 체결하기 전에 국민 및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FTA 체결 과정이 마라톤이라면 이제 갓 출발선을 떠난 것에 불과하지만, 한·중미 FTA와 한·에콰도르 FTA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한국은 이미 칠레, 페루와 FTA를 발효하고 있고, 콜롬비아와는 발효 전 단계를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다. 중미(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와 에콰도르와의 FTA가 체결된다면 캐나다·미국·멕시코의 북미와 중미, 남미까지 모든 태평양 인접 국가가 한국과 FTA로 연결되는 것이다(한·멕시코 FTA는 현재 협상 중단 상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남미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재호 씨(29)는 이처럼 중남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을 내심 반기고 있다. 열심히 갈고 닦은 중남미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해 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될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 스페인 축구 리그에 열광했던 그는 대학 진학 때도 스페인어를 전공했다. 대학교 3학년 중남미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특색을 지닌 팔색조 매력의 중남미에 빠져 들었다.

지난해 여름 코스타리카를 다녀오면서 중남미에 대한 확신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빠른 성장에 필요한 경제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중남미는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다. 중남미 또한 한국의 뛰어난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남미와의 FTA는 서로 원·원 할 수 있는 무역협정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정 씨는 향후 중남미에 대한 지식을 더욱 갈고 닦아 실무적인 경제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정 씨처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인재들 덕분에 다가올 중남미 전성시대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의심치 않아도 될 것이다. ☞





20

Contents

May 2015 vol. 36



COVER STORY

미국, EU, 중국 다음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거대 시장인 중남미를 이번 호에서 집중 조명해 봤습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 외에도 MERCOSUR, 중미, 멕시코, 에콰도르 등과 FTA가 논의되면서 향후 중남미는 한국의 중요한 FTA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5년 5월 6일(통권 36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People

- 01 정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대학원생

Issue Focus

- 04 지상중계:
한·미 FTA 활용 미국시장 진출 설명회
- 06 찾아가 봤습니다:
①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 08 찾아가 봤습니다:
②YES FTA 차이나센터(서울본부세관)
- 10 베이징 KBP 개관식 및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Cover Story

중남미 시장과 한국의 FTA

- 12 중남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All About Latin America
- 14 중남미 시장의 중요성과 한국의 FTA 전략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교수
- 16 인터뷰: 정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소장

FTA Cartoon

- 18 중남미 시장이 FTA로 가까워집니다!
안종만



06



08

China Special

- 20 지상중계:
한·중 FTA 활용방안 지방순회 설명회(인천)

- 22 한·중 및 한·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주요내용

- 24 한·중 FTA TBT 협정 현황 및 이행계획
박재훈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정책팀장

FTA Study

- 28 자유무역의 역사:
⑯환경상품협정(EGA)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국제경제학 박사)

- 30 세계의 FTA:
⑮MERCOSUR의 FTA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 32 FTA와 국내 방송생태계 판도 변화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 34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⑫도자기제품
이민선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 36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제3국 송장 발행
유영진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현장지원실)

- 38 한·중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 제도 알아보기
유영웅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Art & Culture

-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⑦박태원의 '천변풍경'

FTA News

- 42 산업부, '新FTA 추진전략' 발표 등

FTA Square

- 44 FTA 정보&독자의 소리

글 이진원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지상중계: 한·미 FTA 활용 미국시장 진출 설명회

미국 소비심리 살아... 온라인마켓 이용한 '역직구' 해볼만

FTA로 세계 무역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지만,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등이 활성화되면서 국경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구분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4월 24일 경기FTA활용지원센터가 개최한 '한·미 FTA 활용 미국시장 진출 설명회'는 발효 3년을 넘기고 있는 한·미 FTA의 성과와 미국 경기를 진단하고, 온라인 마켓인 '이베이' '아마존'을 통한 해외 판매 노하우를 전하는 자리였다. 주요 내용을 짚어 전한다.

1강

2015년 미국 경제동향 및 전망과 한·미 FTA를 활용한 진출 전략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원



최근 미국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낙관적으로 모아진다. GDP를 구성하는 4가지 구성요소인 개인소비·정부지출·기업투자·수출 중에서 개인소비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저유가로 차량 연료비가 줄었고, 주가가

사상 최대치로 오르며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반면 국방비 감소로 정부지출은 줄었고, 저유가로 세일가스 투자가 줄어 기업투자가 감소했고, 강달러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미국 기업구매담당자 설문을 통해 산출하는 ISM제조업지수는 2012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50 이상을 기록해 경기 확장 추세를 반영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 설문을 통해 산출한 소비자신뢰지수 또한 5개월 연속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주체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베이, 아마존을 통해 이미 국내에서도 대박을 터뜨린 판매자들이 종종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쌍둥이 형제가 운영하는 '더블유(Doublju)'는 2008년 이베이로 시작했으며,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의류 매출이 하루 4,000만~5,000만 원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 이들이 판매하는 의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티셔츠 같은 것들이다. 의류 외에도 핸드폰케이스, 전자제품, 화장품 등으로 대박을 낸 국내 판매자들이 많다.

한·미 FTA 3년차(2014년) 양국 간 교역액은 1,15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며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3.3% 증가, 수입은 9.1% 증가했다. 주요 대미 수출품은 자동차(150.1억 달러), 휴대전화(83.0억 달러), 자동차부품(66.1억 달러), 석유제품(30.6억 달러), 반도체(28.9억 달러) 순이었다. 주요 대미 수입품은 반도체(39.9억 달러), 반도체제조용장비(25.3억 달러), 항공기 및 부품(19.7억 달러), 식물성물질(19.3억 달러), 곡실류(16.7억 달러, 주로 사료용) 순이었다.

한편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2.97%로 3%에 근접했다. 또한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도 2.74%p로 사상 최저다.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결과로 FTA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2강 이베이 및 아마존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및 온라인 판매 전략

송영민 이에스엠스타트업 송영민 이사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수단이 있어 무역이라는 것 이 꼭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바이어를 발굴해야 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일반인들도 해외 온라인마켓을 통해 한국에서 해외로 물건을 팔 수 있다. 2~3년 전만 해도 이베이(e-Bay)와 아

마존(Amazon)을 이용한 해외판매가 생소했지만, 지금은 일반화되는 추세다. 이베이는 예전부터 한국에서 글로벌 거래가 가능했고, 아마존은 3년 전만 해도 미국에 직접 가서 계좌를 만들어야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계좌 발급을 해주는 대행사들이 생겼다. 이 두 사이트는 시작하기 편한 마켓으로 이들을 이해하면 중국의 알리바바를 비롯한 타국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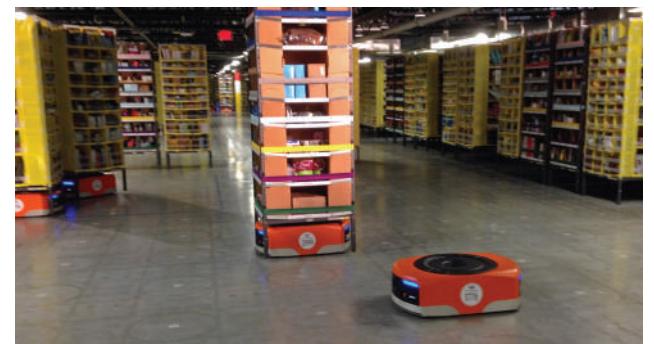
이베이, 아마존을 통해 이미 국내에서도 대박을 터뜨린 판매자들이 종종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쌍둥이 형제가 운영하는 '더블유(Doublju)'는 2008년 이베이로 시작했으며,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의류 매출이 하루 4,000만~5,000만 원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 이들이 판매하는 의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티셔츠 같은 것들이다. 의류 외에도 핸드폰케이스, 전자제품, 화장품 등으로 대박을 낸 국내 판매자들이 많다.

이베이에서는 고정가판매와 함께 경매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베이에는 검색광고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제품을 노출할 수단이 없다. '티셔츠(t shirt)'로 검색하면 390만 개의 제품이 나온다. 홍보 차원에서 몇 개의 물품을 경매에 싸게 내 놓으면 노출이 되고, 이를 본 소비자들이 고정 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 결제는 페이팔(PayPal)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배송은 저렴한 일반우편과 배송추적이 가능한 EMS를 활용하면 된다.

대미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아마존의 물류서비스인 FBA(Fulfillment by Amazon)를 이용해 일정 재고를 물류창고에 넣어두면, 주문 시 판매자가 일일이 발송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FBA 입고를 위해 대량배송을 하는 경우 무관세통관 기준(200달러)을 초과하지만 한·미 FTA 조항에서는 이 경우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태리타월'과 같은 저가물건은 일반우편을 사용하되 1% 정도의 분실율은 감수해야 한다.

판매수수료는 이베이 10%, 페이팔 최소 4%(판매금액이 낮을수록 높음)로 합산하면 15~16% 수준이다. 정품 여부와 정품일지라도 온라인 판매권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농수산품은 아예 안 되고, 김, 다시마와 같은 건조식품은 일부 가능하기도 하지만, 식품은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아마존의 경우 기본 개념은 이베이와 같지만, 개인판매자(individual)와 전문판매자(professional)를 구분하고 있다. 개인판매자는 판매품 목에 제한이 있어 전자제품 등은 가능하나, 화장품, 신발, 의류 등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 시에만 추가 수수료 0.99달러를 내야 한다. 전문판매자는 승인된 모든 카테고리 판매가 가능하나 월 39.99달러의 회비를 내야 한다. 대신 판매당 0.99달러 추가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월 40개 이상 판매가 가능하다면 전문판매자가 유리할 것이다. 결제 수수료는 페이팔과 비슷한 4% 수준이다. ☐

글 이진원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찾아가 봤습니다:
①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FTA 활용 중국 수출의 친절한 도우미

중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다. 요우커(중국관광객)들이 연일 한국을 찾고 있고, 중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중 FTA도 가서명 후 후속작업이 칙칙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3층에 개소한 '차이나데스크(FTA무역종합지원센터 소속)'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의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차이나데스크를 찾아가 보았다.

한·중 FTA는 아직 가서명 단계로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지만, 발효까지는 국회 비준 등 양국 내 절차에 시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의 FTA 활용 경험을 토대로, 발효 즉시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이나데스크를 만들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 FTA 발효 전인 1단계와 발효 후인 2단계의 단계별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1단계의 조직구성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5개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와 2명의 관세사 등 1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루 30~40건의 전화상담과 평균 5건의 방문상담을 받고 있다.

향후 한·중 FTA 발효 후(2단계)에는 한·중 FTA 활용 및 사후검증 대비, 수출 판로 개척,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유관기관 인력을 보강해 총 2팀 15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차이나데스크 이용방법은 기존 FTA 상담과 동일하게 (국번 없이) 1380으로 전화하면 되고, 중국 관련 상담인 경우 차이나데스크로 연결된다. ☎

6

Mini Interview

이창선
차이나데스크 실장

**일 30~40건 상담,
한·중 FTA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높아**

개소 한 달 동안의 활동내용은 어땠습니까?

일평균 30~40건의 전화 및 인터넷 상담, 5건 정도의 방문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 및 화학제품, 섬유, 기계류, 가공식품에 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분야별로는 FTA 활용상담(상품정보, 관세 양허, 원산지 문의)이 70%, 대중국 일반수출상담(수출입절차, 중국내 인증취득, 시장정보, 지식재산권 보호)이 30% 정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월말까지 지방을 순회하며 한·중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차이나데스크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한·중 FTA 가서명 이후 FTA를 활용한 중국 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이후 실제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업들이 발효에 앞서 인증 취득, 모조상품 방지, 지식재산권 보호와 특허 출원, 또한 현지시장 진출전략 등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발효 후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차이나데스크의 활동 방향은 무엇입니까?

한·중 FTA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또한 중국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KOTRA, 대한상의, aT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입체적으로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이나데스크 담당자들의 각오 한 마디



한재완 과장(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발령 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많이 체감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무역업체가 FTA 활용 시 열악한 인력구조상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항상 느꼈습니다. 업체들이 보다 손쉽게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개발하겠습니다.



홍희 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FTA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지원, 수출유망품목 소개, 시장진출 컨설팅, 마케팅사업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OTRA에서 베이징 등 4곳에 설치한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해 우리 기업과 중국 바이어들을 국내외에서 유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국 수출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 차장(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견 나온 김기태입니다.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원산지관리 등 한·중 FTA 활용 관련 업계에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이종경 전문위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aT에서 33년간 재직 후 2014년 말 정년퇴임하고 차이나데스크에 합류해 중국 내 농수산식품 시장정보 제공, 중국시장 컨설팅,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대(對)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여건은 어렵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국의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손보인 변호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중국과 무역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관한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은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경향이 많은데,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선 관세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관세행정 및 관세제도 연구를 하다 합류했습니다. 차이나데스크에서는 HS 품목분류, 양허세율, 원산지규정 등 한·중 FTA 활용 관련 상담을 기본으로 각종 세미나, 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FTA의 활용은 차이나데스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관세사
무역회사와 관세법인에서 3년간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민선 관세사와 함께 한·중 FTA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20년 후 90% 이상의 한·중 교역 품목이 무관세로 풀리게 됩니다. 그 때 한국산 제품이 중국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돋겠습니다.



차현태 인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에 재학 중인 인턴 사원입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청이 함께 개최하는 한·중 FTA 활용 방안 설명회 보조 업무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데스크의 한·중 FTA 관련 사업에 대한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는 부자중으로 취재에 응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서울본부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직원들이 함께 사진촬영에 응했다.

찾아가 봤습니다:
②YES FTA 차이나센터(서울본부세관)

전국 30개 세관서 한·중 FTA 밀착 지원

FTA 활용 지원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지만, 무역업무의 최전선에 있는 관세청 또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FTA 활용에 앞장서는 기관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3월 2일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비즈니스 지원에 나섰다. 그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서울본부세관의 센터를 찾아가 보았다.

YES FTA 차이나센터

'YES FTA 차이나센터'는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돼 있으며 총 85명의 세관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된 6개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평택은 직할세관)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내 전담인력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3명(인천·평택은 4명)의 전담자를 둔 타 본부세관과 달리 서울본부세관에는 5명이 YES FTA 차이나센터(이하 센터)에 전담 배치돼 있다.

센터의 역할은 대(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통관애로 해소 등 한·중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1 대 1 밀착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로 품목분류,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대응, 중국 통관절차와 관행, 비관세장벽,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지난 50여 일 동안(방문일 4월 23일 기준)의 활동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센터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전해 본다.

Mini Interview

김지현
서울본부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센터장(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센터장 겸임)

YES FTA 차이나센터 개소 후 활동 내용은 어땠습니까?

개소 이후 하루 평균 30건의 전화 및 인터넷 상담, 2~3건 정도의 방문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기계류, 가공식품에 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분야별로는 한·중 FTA 발효 예상 시기, FTA 활용 상담(상품정보, 관세양허, 원산지 문의) 등이며, 대중국 일반수출상담(중국 내 인증취득, 시장정보)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내 기업 등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이동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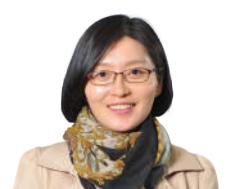
한·중 FTA 발효 전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컨설팅사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등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FTA·AEO 활용촉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발효 직후에는 '한·중 FTA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해 원산지 증명의 애로를 해소하고, 'YES FTA' 포털사이트(YESFTA.customs.go.kr)에 '차이나인포(China-Info)'를 개설해 대중국 관세·통관정보 제공 및 전문 컨설턴트의 온라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발효 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해 한·중 FTA를 발효 직후부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직원들을 소개합니다



정민숙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의 인방설립을 도맡고 있습니다. 센터 발령 전 서울본부세관 FTA과에서 원산지 검증업무를 2년간 진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많이 체감했습니다. 특히 FTA 원산지 관리의 복잡성·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을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손쉽게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지원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선 관세행정관

FTA 활용 기획과 FTA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과 양성된 FTA 인재 채용을 통해 FTA 활용률을 해마다 높이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는 센터 전담이라는 역할에 맞게 한·중 FTA 발효 선제 대응을 위한 FTA 컨설팅 및 구인·구직 연계프로그램을 주기로 마련해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호 관세행정관

한·중 FTA 활용 관련 업계 애로 발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6.1%(2014년)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며,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우리 관세행정의 가장 큰 외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YES FTA 차이나센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전희경 관세행정관

YES FTA 아카데미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터 발령 전 구로세관에서 수출통관 업무를 했습니다. 숙련된 현장 업무 경험과 해박한 통관 업무 지식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의 열정과 친절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YES FTA 상설교육센터'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가까운 서울세관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기업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 바랍니다.

번호	코드	구분	코드	해당 업무
125	20	고객지원	10	밀수신고 지역번호 미약, 밀수, 관세탈루, 원산지, 불법외환 등
			1	FTA & 125 차이나콜센터
			2	해외직구
			3	우편물, 여행자, 이사물품
			4	품목분류, HS CODE
			5	수입통관 및 평가검면
			6	수출통관
			7	관세환급
			8	보세·화물관리
			9	조사·외환, 기타상담

※'125 차이나콜센터' 이용방법: 125→20→1을 안내에 따라 누르면 된다.

'125 차이나콜센터' 통해 한·중 FTA 상담 시작

관세청은 '125 관세청 콜센터'에 전담인원을 배치해 한·중 FTA 전문상담 체계를 구축했다. 추가로 밀착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역별 'YES FTA 차이나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경기지역, 인천·서해안지역, 부산·경남지역 3개 권역으로 구분해 'YES FTA 차이나센터'와 연결하고, 기타 지역은 상담인력이 많은 서울본부세관 센터로 연결된다. 이용방법은 국번 없이 125를 누른 뒤 ARS(자동응답)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글 김보람 기자
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난 4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가운데 왼쪽), 김재홍 KOTRA 사장(가운데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및 '코리아 비즈니스 플라자'가 개소식을 가졌다.

베이징 KBP 개관식 및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4개 거점서 동시 오픈…국내외 통합 지원 개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중 FTA 가서명 이후 한층 관심이 높아진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돋기 위해 중국 현지에 4월 8일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코리아비즈니스플라자(이하 플라자)'를 동시 개관했다. 센터와 플라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협업시스템으로 운영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중국진출 지원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지역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는 베이징·상하이·청두·칭다오 등 4곳에 동시 설치됐으며, FTA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혜택과 활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을 위해 FTA 관련 정보 제공과 시장진출 컨설팅 및 마케팅 업무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기능별(통관·회계·법률 등), 산업별(부품소재·소비재 등) 현지 민간전문가 64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이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생생한 경험을 우리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흩어져 있던 유관기관 한 곳에 모았다

베이징에 개소한 플라자에는 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 수출지원 4개 기관과 수출인큐베이터, IT지원센터 등이 동반 입주한다. KOTRA는 그동안 각각 흩어져 있던 유관기관, 기업 등을 한지붕 아래 모아 공간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개방형 협업체제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글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교수
사진 한국경제신문



in Brazil

정부가 구상해 온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점차적으로 중남미 전 대륙을 대상으로 넓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브라질 대통령궁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중남미 시장의 중요성과 한국의 FTA 전략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2015년 4월 콜롬비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콜롬비아 FTA의 조속한 비준을 주문했다.

특히 에너지, 광물자원, 커피, 자동차, 전자제품 등 많은 상품들이 활발하게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사회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보건의료, 에너지산업, 치안과 방산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대(對)중남미 경제협력이라는 거시적 의제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현안은 FTA 전략이 중심에 있다. 2004년 한국 역사상 처음 맺은 한·칠레 FTA의 효과가 한·페루(2011년 발효) 그리고 콜롬비아(발효 추진) 등 남미 태평양 유역 국가들은 물론 여타 다른 지역들로도 빠르게 확대 전파되고 있고, 오랫동안 정부가 구상해 온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점차적으로 중남미 전 대륙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서도 나타나듯 그동안 소강상태이던 남미 대서양 지역은 우리나라의 MERCOSUR¹⁾ 진출에 대한 필요성과 브라질 정부의 관심 증가 등으로 진출 전략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남미 서쪽 태평양 지역을 통과해 동쪽 대서양 연안으로 FTA 논의가 확산(spill over)될 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 순방으로 대서양쪽 남미국들 주목

물론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먼 지역에 위치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 차원의 교역 확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장점인 정보통신 기술(ICT)이 활용된 다양한 산업발전(ICT 인프라, e-트레이드, e-커스텀즈, 원격의료, e-커머스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향과 방법 그리고 경제협력의 확대는 남미를 벗어나 중미와 카리브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과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파나마(파나마 운하 1999년 미국의 반환)를 축으로 한 한·중미 지역 FTA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정학적 특징상 중미 지역²⁾은 남미와 북미 시장을 대륙으로 연결하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대양으로 연결하는 물류 중심 지역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이 지역의 전통 상품인 농작물(커피, 과일류) 및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의류 상품들과 교환될 수 있다. 한·중미 FTA 체결 시 '우리나라 GDP 0.0257%, 후생 82.34백만 달러 증가 전망'³⁾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트랙으로 진행 중인 한·에콰도르 FTA는 비록 무역·투자 규모는 작지만 에콰도르가 보유하고 있는 광물자원, 에너지(석유·천연가스)와 향후 발전 잠재성을 고려하면 일종의 자원 FTA 형식으로 무역협정이 맺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미와 마찬가지로 한·에콰도르 수출입 상품에 대한 상호이익 교환이 명확해 이에 대한 경제 후생효과는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과 전망이 존재한다.

남미 태평양 지역 국가들(칠레·콜롬비아·페루)을 교두보로 해 동쪽으로는 대서양 유역 국가들, 북쪽으로는 에콰도르를 포함하여 중미·카리브 지역으로 FTA가 확대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남미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지역 국가들과의 FTA 전략은 이제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한국 FTA 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이들 신흥지역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 교역선의 다변화, 교역품의 다양화 전략이 오늘날 중미 지역으로 FTA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중미 지역 자체적으로 가진 장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남미 역내 차원에서 다양하게 맺고 있는 FTA를 간접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이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FTA 확산의 큰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한·중·일 간 중남미와 FTA 맺기 경쟁 가속화

중남미 지역에서 한·중·일 간의 FTA 선점 경쟁도 에콰도르, 중미 및 카리브 지역으로의 FTA 확산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보다 먼저 FTA를 맺은 한·페루 FTA(2011년 발효)를 통해 보듯이 한국제품의 페루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는 커다. 이 반대의 사례는 멕시코·일본 FTA(2005년 발효)로 인해 한국 상품이 멕시코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진 경우를 볼 수 있다. 멕시코는 이미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과 FTA(2013년 발효)를 맺고 있어 멕시코 시장 진출에 대한 간접적 이득도 기대된다. 한·중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중미 지역 경제협력 및 산업투자 진출도 잠재성이 크다. 특히 경제사회적 빈곤 국가에 사회인프라(도로·항만·운하 건설 등)가 약해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 한·중미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내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쟁도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중미 국가들의 경제적 규모도 크지 않지만 중미 및 에콰도르의 열대 기후에서 생산되는 농업 생산품들이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FTA로 인한 국내 농업이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중미 국가들의 주요 수출 상품들인 커피 혹은 과일 등은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과일 수입을 대체해 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과 평가가 우세하다.❷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은 한국의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기간 중 칠레, 페루, 콜롬비아 정상과 만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in Chile



in Peru



in Colombia

1) 남미공동시장: 30쪽 참고.

2)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의 6개국으로 '커피공화국' 혹은 '바나나공화국'으로 불림.

3)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종섭 연구팀.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인터뷰: 정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소장

성장잠재력·자원보유량·투자기회 풍부… 중남미 진출은 '선택' 아닌 '필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이미 중국의 성장을 통해 덩치 큰 신흥국의 잠재력을 깨달은 바 있다. 인구·영토·자원의 사이즈라는 면에서 중남미는 중국을 잇는 거대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통령의 순방 등으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중남미 연구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정경원 소장으로부터 중남미의 매력에 대해 들어보았다.



연구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대(對)중남미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중남미 지역에 대한 미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1974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에서 중남미 지역 연구는 실질적으로 전인 미답의 상태였으나 외대 중남미연구소 개소 이후 40년 넘는 시간 동안 지역 전문가 배출, 연구 영역의 다변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중남

미 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연구 성과를 정부, 기업, 민간에 제공해 중남미 지역 진출을 적극적으로 돋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중남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남미는 인구 6억3,000만 명에 연 성장률이 6%에 달하고, 실질적인 시장 규모를 보면 총 GDP 6조 달러, 그리고 3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시장이 존재합니다. 인구 과반수가 30대 미만으로 젊은 노동력의 존재는 물론, 중산층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현재 지역 전체 평균 40%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원 다각화 진출 전략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이은 제2의 석유매장량 보유 및 세계 광물자원의 2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구리나 리튬 자원을 보면 세계 생산량 40%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기회가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 등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확대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농업, 의료보건, 바이오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 투자협력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FTA를 맺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간단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칠레(2004년)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후 2011년 페루와 FTA를 발효했고, 콜롬비아와의 FTA는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로 양국의 교역은 10년 동안 약 5배로 늘었으며, 현재 제2단계로 확대해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육 사업과 문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양국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칠레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FTA 역사의 출발점이자 이웃 남미 지역으로 확산(spill over)하는 거점 국가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칠레를 거점으로 남미 태평양 지역 경제공동체 진출(태평양동맹 혹은 TPP)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와는 아직 발효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 내 절차가 완료됐고, 콜롬비아측은 행정



부와 국회(2014년 12월 동의) 절차를 끝난 상태로 조만간 한법재판소 통과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루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기회는 더욱 증폭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 차원에서 민감한 방산산업의 양국 협력이야말로 한·페루 FTA의 최대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과 FTA 논의 중인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맹주라 할 수

있는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개최로 인한 사회 인프라 건설에 특화돼 있고 최근 석유 및 에탄을 개발, 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산업 진출, 그리고 한국의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자유무역이라는 카드가 필요한 국가이자 경제공동체입니다. 미국시장으로의 간접적 접근 차원에서 중미 지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멕시코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1억 명 이상의 소비시장과 인근 미국의 3억 인구 고려)에서 이미 한·중·일(일본은 이미 멕시코와 FTA 체결로 경쟁력 확보) 각축장이 됐습니다. 대중남미 지역으로의 단계적 차원의 지역 확대, 공동연구, 협상참여, 비준을 통한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한·중남미 관계가 발전하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기기를 희망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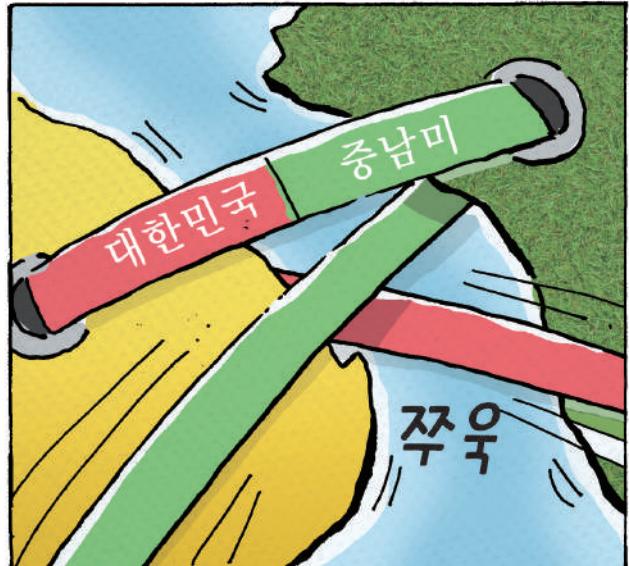
중남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국내기업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저발전, 포퓰리즘,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 치안불안 등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선입견과 이로 인한 진출 포기 혹은 보류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일부 국가들에서 여전히 치안문제 및 안보 불안의 문제는 있지만 2000년대 들어 많은 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투자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산업인프라, ICT, 의료보건,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미래 인재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울러 중남미 지역 노동시장의 특징상 한국 인재들의 중남미 진출에서 임금의 불균형, 정서적 측면의 사회적 불안, 현지 노동법(제도)의 경직성, 노사문화의 차이 등으로 대중남미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이 상존해 있으며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기업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남미지역 사업 진출 및 비즈니스 협상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amigo)'가 되기 전에 너무 '빨리빨리'를 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이 사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

중남미 시장이 FTA로 가까워집니다!



인구 6억3000만 명, 연 성장을 6%, 인구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 총 GDP 6조 달러의 매력적인 중남미 시장



중동에 이은 세계 제 2의 석유 매장량, 세계 광물자원의 20% 이상 생산.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외국인 투자 확대까지.



새로운 성장의 물꼬를 트고 있는
중남미와 한국의 FTA 체결은 양자 모두에
실익을 가져다 주는 원·원 전략이 될 것입니다.

Deep Focusing About Korea-China FTA

북인북 스페셜: 한·중 FTA 활용 심화



한·중 FTA
활용방안 지방순회
설명회(인천)

한·중 및 한·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주요내용

한·중 FTA
TBT 협정 현황 및
이행계획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4월 16일 인천중소기업청 강당에서 열린 '한·중 FTA 활용방안 지방순회 설명회' 모습.

지상중계: 한·중 FTA 활용방안 지방순회 설명회(인천) **FTA 활용 중국 비즈니스 A부터 Z까지 완벽 가이드**

유관기관들의 한·중 FTA 활용 지원 노력이 한창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청,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는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중 FTA 활용방안 지방 순회 설명회'를 총 9차례 개최했다. 그 중 여덟 번째 순서로 4월 16일 인천에서 열린 설명회를 찾아가 보았다.

FTA 관련 행사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횟수가 많은 반면, 제조업체들은 지방 외진 곳에 위치하다 보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편이다. 지역FTA 활용지원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어 사각지대는 거의 없어졌지만, 정보가 전파되는 시차는 아무래도 불행하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중 FTA 활용방안 지방 순회 설명회(이하 설명회)'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정보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 FTA의 개념 및 활용방안과 중국 수출 시 부딪히는 애로 해소까지 다루는 백과사전 식 설명회처럼 진행됐다. 그간 '함께하는 FTA'를 통해 다뤄진 내용 외에 설명회에서 이상 깊었던 내용들을 전해 본다.

한·중 FTA 활용방안 지방순회 설명회 일정·장소(일정 종료)

3월 26일 대구
3월 27일 부산
4월 1일 제주
4월 6일 전주
4월 7일 광주
4월 9일 청원
4월 14일 춘천
4월 16일 인천
4월 28일 대전

한·중 FTA는 기존 FTA와 다른 점 많아

김기호 인천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기업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한·미 FTA와 비교할 때 한·중 FTA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중 FTA에서의 입증서류 보관의무기간은 3년이지만, 대부분의 FTA가 5년이므로 5년 간 보관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양국 모두 영어로만 작성해야 하지만, 기관발급이므로 생산자, 수출자가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후검증에 대비해 발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들은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항목	한·중 FTA	한·미 FTA
원산지기준 중 부가가치 판정 방법	공제법(BD)만 규정	공제법(BD), 직접법(BU), 순원가법(자동차제품에 한함)
상품가격 계상 기준	본선인도가격(FOB)	조정가치(AV) 및 순원가(NC)
완전생산기준	기준 협정과 유사. 단,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은 당시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야 함.	도축기준
직접운송	직접운송 원칙 규정. 비당사국 보관은 3개월 이내로 규정.	보관기관 규정 없음.
서류보관	사후검증 관련 서류보관의무 3년	5년
최소허용기준	10%	가격기준 10%, 중량기준 7%
세트물품 규정	FOB 가격의 15%	일반물품: 조정가치의 15% 섬유제품: 관세가치의 10%
역외가공 규정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허용 (추가 지정 가능)	역외가공위원회 설치
원산지증명서 관련		
발급 원칙	월칙적 기관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 발급 불가)	자율발급
발급 주체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사용 언어	영어	한국어, 영어
작성 시점	선적 후 7일 전후 (유효기간 1년 이내. 선적일 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	규정 없음 (유효기간 4년)
면제 요건	미화 700달러 이하	미화 1,000달러 이하
사후검증 절차	간접검증, 직접검증	직접검증

· 출처: '한·중 FTA 활용방안 지방 순회 설명회' 자료집

중국 강제인증제도, 영업 후 준비하면 늦어

채지영 CCIC코리아 인증개발부 차장



중국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대상 품목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중국 통관 시 CCC 품목이 되는 경우도 있고, CCC 허가를 위해 보낸 샘플을 'CCC 인증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기도 하는 등 한국 수출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통관은 가능하지만, 중국 내 판매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런 만큼 인증은 수출의 마지막 단계에서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인증을 먼저 한 후 중국 내 영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식품·화장품이 받아야 하는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의 경우는 CCC 와 달리 중국 내에 반드시 연락망(법인 또는 판매상)이 지정되어 있고 위임장을 제출해야하는데, 이 때 중국 파트너가 판권 위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인증을 위해 판권까지 위임할 필요는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성분검사가 가장 중요한데, 제출한 성분표와 중국 내 테스트 시의 성분이 일치해야 한다.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라벨링인데, 2013년 개정된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표권은 사업 개시와 동시에 등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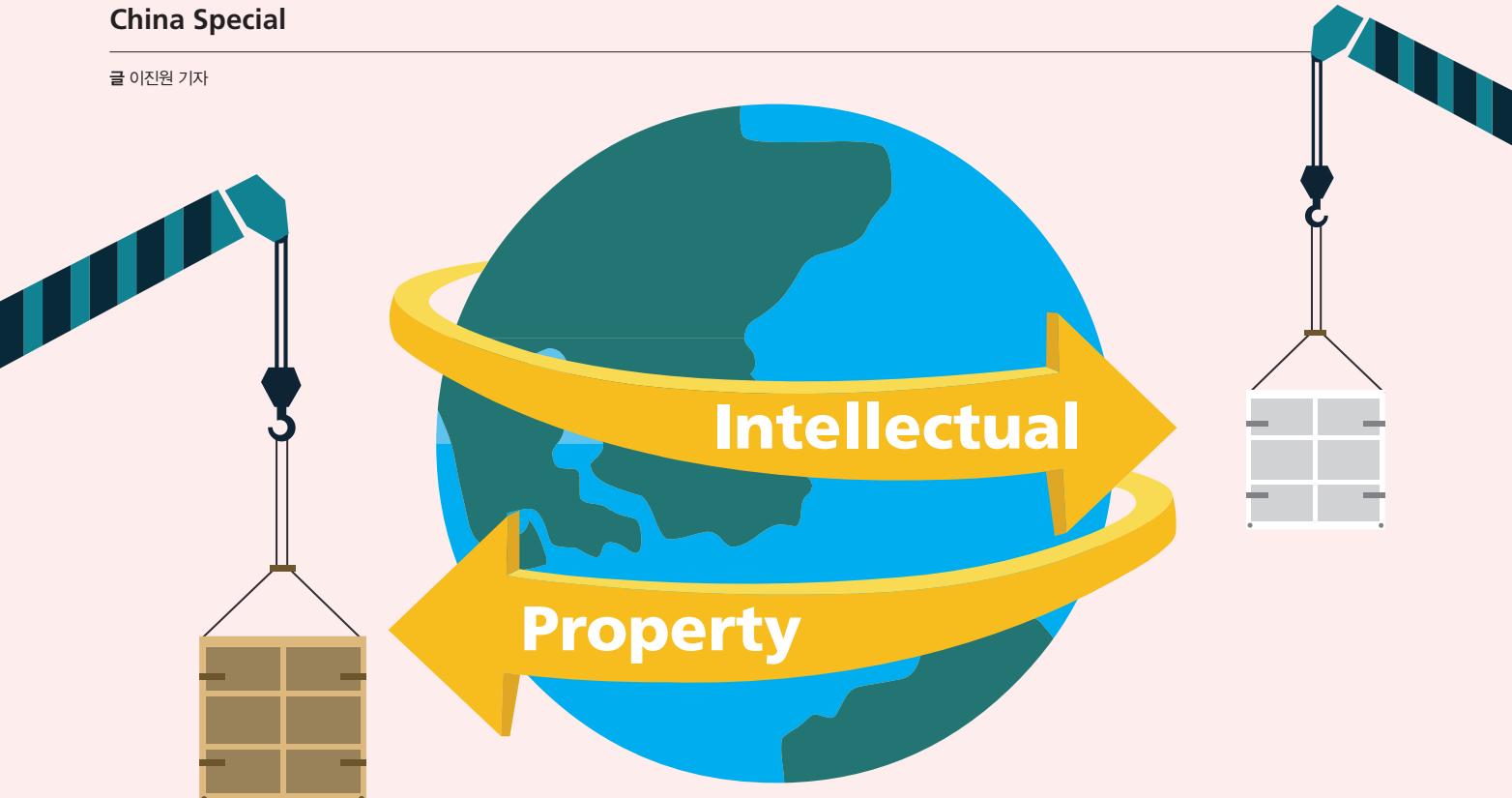
손보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변호사



지적재산권 중에서 디자인특허 및 등록실용신안은 중국에서 무심사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권리자는 약하다. 디자인과 실용신안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소송을 걸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상표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권은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중국 내 통관 시에도 디자인과 실용신안 침해 여부는 세관에서 알아내기 어렵지만, 상표는 확연하게 눈에 보인다. 최근 중국 내 상표사냥꾼이 한국 내 상표를 선점하고 수억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중국 관련 사업을 한다면 중국 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필수다. 한편 상표는 상호뿐만 아니라 입체상표 등록도 가능하다. 비아그라 디자인특허가 만료된 뒤에도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형태와 색상을 상표로 등록해 유사제품을 막고 있다. 중국 내 KOTRA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상표 및 디자인권 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길 바란다. (☞)

※이 외에도 많은 강사들이 알찬 내용들을 강의했으나, 지면 사정으로 다 실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글 이진원 기자



한·중 및 한·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주요내용

유명상표 선점, 짝퉁 유통 등 지재권 침해 대응 가능해져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과 체결되는 FTA를 통해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FTA 협정문 중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의 특허·상표 보호'에 특화된 최초의 설명회로, 중국·베트남 기업의 유명상표 선점 행위, 짝퉁 상품 유통, 권리구제 지연 등 비관세장벽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질의할 수 있었다.

한·중 및 한·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일정·장소(일정 종료)

4월 10일 경주
4월 17일 창원
4월 20일 오창
4월 23일 군산
4월 30일 평택

한·중 및 한·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주요 질의·응답 내용

Q&A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를 중국이나 베트남 회사가 현지에서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 중이라면 이에 대한 해책이 있는가?

한·중 FTA에서는 중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표일지라도 유명한 상표일 경우에는 일정한 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유명상표와 똑같거나 유사해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상표를 △그 유명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용해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중국의 주무 부처는 그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그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베트남 FTA에서도 한·중 FTA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반영됐다.

우리나라에서 과자에 사용되는 유명상표를 중국 회사가 아동용 완구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했다면 대응방안이 있는가?

한·중 FTA에서는 ①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상표를 ②해당 유명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사용해 ③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표장의 등록거절·등록취소·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자에 사용되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등록 혹은 등록 유명상표를 중국 회사가 아동용 완구에 사용하기 위해 현지에서 등록을 완료한 경우, 한·중 FTA에 따라 중국 주무관청은 해당 과자와 아동용 완구가 관련이 있는 상품일 경우 상표의 등록거절, 등록취소,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자는 관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한·베트남 FTA에서는 ①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②해당 유명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해 ③선행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상표권자와의 관련성을 오인 혹은 기만하거나 명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표장의 등록거절·등록취소·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에 따라 베트남 주무관청은 해당 과자와 아동용 완구가 동일·유사한 상품일 경우 상표의 등록거절, 등록취소,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자는 관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특허의 조속한 등록을 위해 우선심사제도가 필요한데, 관련 제도가 반영되었는가?

한·중 및 한·베트남 FTA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특히 심사 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중국과 베트남에서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FTA 이행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이 실용신안권을 남용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가?

한·중 FTA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법원이 원고(실용신안 권리자)에게 특허당국에 의해 작성된 실용신안 평가보고서를 침해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록하는 무심사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중국기업이 이를 악용해 실용신안을 등록한 후 소송 위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가 있었다. 한·중 FTA로 중국기업이 실용신안을 근거로 우리 기업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비밀 자료가 피고측 변호사에 의해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대처 방안이 있는가?

한·중 및 한·베트남 FTA에서는 민사재판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등 소송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측 변호사가 특허침해 소송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자료를 유출한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가?

한·중 및 한·베트남 FTA에서는 잠정조치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지재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자가 집행당국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집행당국은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했다. 잠정조치를 적용할 때 집행당국은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침해자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제도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시행한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기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국내물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 적용했다. 그러나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 온 CCE(상품안전인증)와 수입품에 부여해 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를 2002년 5월 1일 CCC로 통합했다.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중국에서 해당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CCC마크를 획득해야 하며, 인증을 못 받으면 출고·수입·판매 및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한·중 FTA TBT 협정 현황 및 이행계획

우리측 애로 상당 부분 해소... WTO 이상 수준으로 타결

한·중 FTA 협상 초기부터 우리 기업과 무역전문가들은 중국 비관세장벽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 인증마크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중국이 자국 내 자정시험소 성적서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중 FTA 협상에서는 국내 기업이 중국시장 진출 시 겪어야 하는 구조적인 시험·인증 애로의 해소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한·중 FTA의 TBT 분야 협상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들을 반영시켜 TBT 애로 해소 원칙, 소비자제품 안전 협력, 시험인증기관 중국 진출 시 협력 등 15개 조(article)의 TBT 협정문을 타결했다. 사진은 한·중 FTA 협상 모습.

일반적으로 국내업체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 중에서 특히, 자동차 부품 및 전기용품들에 대한 CCC 인증 절차,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행정허가 과정에서 국내업체들은 시간적, 경제적 애로를 많이 호소한다.

CCC 인증의 경우 △인증 소요 시간 및 비용 과다 △시험용 시료 통관 어려움 △CCC 인증 라벨 구매 및 등록 절차 불편 △5년 후 인증서 재신청 번거로움 △기술규정 불명확으로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사례 등을 호소한다. 특히 전기용품의 경우 △IECEE CB 성적서 사실상 미수용 △제조자시험소 시험결과 불인정이 두드러지고,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공장심사의 까다로움(램프 등 일부품목 연 2회 사후심사) △규정 제·개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빈번하게 제기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행정허가의 경우, 중국 국내산은 지방성급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외국산의 경우 식약총국(CFDA)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해 허가절차 상에서 국내외산 차별 가능성이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 △위생행정허가 장시간 소요 △수입품 통관과정에서의 추가 검사 요구 등에 대해서 국내업체들은 불편함을 제기한다. 또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빈번한 기술규정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 공지, 기술규정 제·개정 시 업계 의견반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중국 인증제도들에 대한 정보 부족, 중국어 소통장애 등의 애로도 겪고 있다.

1·2단계 협상에서 양측 팽팽히 맞서

한·중 FTA 1단계 협상(2012년 5월~2013년 9월) 내내 우리측은 국내기업이 중국 수출 시 겪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애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들이 TBT 협정문에 포함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중국측은 제한된 기간에 진행되는 협상에서 개별적인 TBT 애로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따르므로, 애로해결을 위한 논의장치를 반영하고 FTA 타결 후 논의장치를 통해 애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1단계 합의사항으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논의장치 등 최소한 10개

의 협정문 조(article) 구성에 합의했으며, TBT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 FTA, 한·EU FTA TBT 협정문의 경우에도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논의장치 등 10개 조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의 경우에도 한·미, 한·EU의 경우와 대등하게 협정문 조문 구성이 가능하도록 1단계 TBT 협상을 마무리 했다.

2단계 협상(2013년 11월~2014년 11월)에서 한·중 양측은 TBT 협정문(조안)을 각각 제시했다. 우리측은 한·EU, 한·미 FTA의 TBT 협정문과 유사하게 높은 수준으로, 대(對)중국 수출업계의 TBT애로 해소 장치를 반영해 투명성, 논의장치 등 본문 13개 조(50개 항)와 전기안전 작업반 부속서로 초안을 구성해 제안했다.

반면 중국측은 10개 조(19개 항)로 구성된 초안을 제시했다. 중국이 제시한 초안에는 적합성평가, 투명성 등의 조항이 우리측 기대 수준보다 훨씬 낮았으며, WTO TBT 협정문과 유사한 수준으로 일반적인 FTA TBT 협정문 관점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조항들로 구성돼 있었다. 양측은 자국의 초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고, 협상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전개됐다.

높은 수준으로 협정 마무리...후속조치 잘 해야

최종적으로 TBT 애로 해소 원칙, 소비자제품 안전 협력, 시험인증기관 중국 진출 시 협력 등 우리의 주요 관심 조항들을 반영시켜 15개 조(article)의 TBT 협정문을 타결했다(26쪽 참고). TBT 애로 해결 원칙으로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공인(IECEE CB)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적합성평가 협력 이행 약정(전기용품, 자동차부품 등) 상호인정 협상 개시 △시험·인증 비용 및 기간 축소를 위한 협력 △시험용

시료 통관원활화를 위한 조치 시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접근 가능토록 기술규정을 공지 △소비자 제품안전 정보교환 및 시행 협력 △상대국 시험·인증기관 설립 및 운영 시 협력 △TBT 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한 조항들 내용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대부분 중국의 기 체결 TBT 협정문에는 없는 것으로 한·중 FTA에 신규로 포함됐으며 모두 WTO TBT 협정문 이상 수준의 조항들이다. 다만, 중국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등 시험인증 원활화 수단 합의를 협상 목표로 했으나 협상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행단계로 넘긴 것은 아쉬운 점으로 들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제도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측이 TBT 협상에서 주장했던 사항들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추세다. 중국은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인정제도 도입 추진(2013년 9월 발표), 정보기기 공장심사 폐지(2014년 7월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CCC 시험인증 시장을 외국계 기관에 개방해 UL(미국계 인증기관), SGS(유럽계 인증기관)를 CCC시험소로 지정(2014년 7월)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TBT 협정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후속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①전기안전분야 국제공인성적서 활용 상호인정 추진 ②TBT 협력체계 구축 및 일반적 TBT 애로완화 ③시험인증기관 중국진출 및 사업활성화 지원 ④한·중 간 제품안전 협력체계 구축 ⑤한·중 FTA TBT 협정 홍보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이 주요한 이행과제들이다. 이를 위해 '한·중 TBT 대책반'을 구성하고, 그 하부에 분야별로 상호인정 작업반, TBT 애로 대응 작업반, 시험인증기관 중국 진출 작업반, 제품안전협력 작업반 등을 운영하면서 작업반별로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



한·중 FTA TBT 협정문 주요내용

조	명칭	주요 내용
1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 TBT 분야 정보교환을 통한 협력 강화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가 불필요한 무역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2	적용범위 및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종업정부의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에 적용 정부조달규격과 SPS는 제외 양 당사자는 지방정부의 TBT 챕터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적용 WTO TBT 협정 Annex 1의 정의를 적용
3	WTO TBT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TBT 협정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하고 WTO TBT 협정문을 FTA TBT 협정문의 일부로 포함
4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TBT 협정문 부속서3 준수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적용 양국 표준화기관의 협력을 장려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의 기반으로 국제표준을 활용 국제표준 여부 판단을 위해서 WTO TBT 위원회의 결정 고려하며, ISO, IEC, ITU, Codex 등을 국제표준으로 포함
5	기술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국의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 요청에 대한 긍정적 검토 상대국의 기술규정 동등성을 미수용하는 경우,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사유 설명 의무화
6	적합성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메카니즘(△상대국의 적합성평가 결과 수용 합의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절차 채택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상대국의 적합성평가 결과 인정 △적합성평가기관 간 자발적 협정 △SDoC 수용 등)이 존재함을 인식 관련 메카니즘들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적합성평가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해 적합성평가 기관 간에 긴밀한 업무협력 촉진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 대우 MRA 협상 요구에 긍정적 고려 적합성평가절차 비용과 시간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는데 협력
7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규정 등의 통보에 대해 상대국이 코멘트 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을 허용 요청 시, 채택되거나 제안중인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규정 채택 이후 시행시기 연장 요청에 긍정적 검토 채택된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들을 상대국인이 입수 가능하도록 즉시 공지
8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분야의 협력 강화 상대국의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분야의 협력 요청에 긍정적 검토. 협력분야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개발에 조언 제공 △표준·시험·인증 관련 기관들에 대한 협력 장려 △적합성평가기관 평가를 위해 인정활용 △관련된 국제표준을 총족시키기 위한 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에 협력 배양 △표준과 적합성평가절차 개발과 적용에 관련된 지역 및 국제 기구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 △WTO TBT 위원회 및 다른 관련된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 소통과 조정 강화 △TBT 협정 이행 촉진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이 자국내 운영, 설립 시 협력 신기술관련 규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교환 IECEE CB시험성적서를 양국 전기제품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결과로 수용 독려
9	소비자 제품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사용 제품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 인식 규제 시스템, 위해제품 조치사항, 사후관리 정보 등에 대한 정보 교환 제품안전 모니터링, 규제시행 등을 포함한 모범규제관행, 위험관리 원칙 이행 등에 대한 양국 협력
10	이행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성평가 협력 분야의 이행협약을 조기에 협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서 이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11	마킹 및 라벨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규정이 마킹과 라벨링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허용 마킹과 라벨링 요구사항이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 제품의 마킹과 라벨링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마킹과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요구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마킹과 라벨링의 사전 등록·허가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 △특정의 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비차별적으로 부당한 자연 없이 발행 △특정한 언어사용을 요구할수 있으며 이런 경우 주가적인 언어 사용 금지 불허 △비영구적 혹은 틸착 가능한 라벨 사용을 허용 등
12	국경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샘플을 포함한 통관 억류제품에 대한 사유를 수입자 또는 대표자에 즉시 통보
13	TBT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T위원회 설치 합의 TBT위원회의 기능으로 △챕터 이행 촉진 및 협력 △이행 점검 및 촉진 △표준·기술규정·적합성평가절차 개발, 채택, 적용, 시행 시 발생되는 이슈 즉시 처리 △협력 촉진 △TBT관련 정보교환 △표준관련 비정부, 지역, 디자인 포럼에 표준개발과 관련된 정보 교환 △MRA 논의 촉진 △챕터 리뷰 △공동위원회 보고 △이 챕터의 이행에 관련된 어려운 조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술협의 등을 포함 1년에 최소한 1회 위원회를 개최 TBT위원회 조정자: 국가기술표준원, 중국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TBT위원회 조정자가 관련기관 조정에 대한 책임
14	정보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방이 요청하는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에 반하는 정보는 제외
15	분쟁해결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분쟁해결절차를 따르지 않음



FTA STUDY

- 자유무역의 역사: 환경상품협정(EGA)
- 세계의 FTA: MERCOSUR의 FTA
- FTA와 국내 방송생태계 판도 변화
-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도자기제품
-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제3국 송장 발행
- 한·중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 제도 알아보기





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환경상품협정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협상으로 WTO 회원국 중 17개국(한국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들이 세계 환경상품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전협상을 통해 10개 환경 카테고리의 580여 개 품목(HS 6단위)으로 회람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5월부터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의 역사: ⑯환경상품협정(EGA)

통상분야도 '친환경'이 대세… 올해 EGA 협상 개시

2015년 5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 160개 회원국 가운데 17개국이 참여하는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EGA는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협상이다. 우리나라도 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협상 참여국들이 세계 환경상품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90%에 육박한다.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된다고 하니, 국내 업계에서도 협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5년 5월 협상 개시…580여 개 품목 관세 인하 논의

공동성명의 주요 요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합의된 54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약속(2015년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주요 교역국을 포함해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인정하고, 교역액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할 때 발효하는 방식(critical mass)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환경 분야와 관련한 다른 이슈들도 같이 다루되, 향후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협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덧붙이고 있다.

환경상품협정 통합리스트 주요 품목(10개 카테고리)

분야	주요 품목
대기오염 관리	기체·진공펌프, 기체 압축기, 팬, 산업용 후드, 여과기·청정기, 활성탄, 크로마토그래프, 가스·매연분석기, 가스누출탐지기 등
폐기물 관리	폐기물 소각로, 바이오매스보일러, 지오멤브레인, 종류·정류기, 파쇄·분쇄기, 선별·분류·세척기, 혼합·반죽기, 컨베이어 벨트 등
폐수 관리	상하수관, 탑·코크·밸브, 연결구류, 액체펌프, 물 여과·청정기, 활성탄, 부직포, 물 안 쓰는 소변기, 슬러지 건조기 등
환경복원·정화	오일스키머, 부교, 전기토양가열기, 토지축량기기, 토양회복시스템, 침식방지용 매트·발 등
소음·진동 제거	산업용 소음기, 응집코르크, 방음용 광물성 재료·제품, 유리제 절연유닛, 소음측정기 등
재생에너지	지열펌프, 풍력발전터빈·기어박스, 수력발전터빈, 증기·가스터빈, 태양광 셀·모듈·패널, 열교환기, 교류발전기 등
에너지효율	LED 조명, 전기·하이브리드·수소연료 자동차, 리튬이온축전지,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용 개폐기·변환기, 절연제 등
환경모니터링	전자현미경, 온도계·고온계, 유량·액면계, 압력계, 가스·매연 분석기기, 매노우스타트, 분광계, 온도자동조절기기 등
자원효율성	재활용가능 재료(플라스틱·고무의 웨이스트/스크랩, 폐지 등), 바이오연료추출기기,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제품	자전거 및 부품, 모터사이클, 대나무·침엽수 목재·제품, 태양열 스토브, 특수어망, 식물성 방직용 섬유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5년 4월 6일자)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2002년 개시된 이래 장기간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진 환경프렌즈그룹을 중심으로 환경상품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을 출범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 마침내 2014년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일부 WTO 회원국이 중심이 돼 '복수국간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참가국은 환경프렌즈그룹에 속한 9개국(한국·미국·EU·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노르웨이·스위스)과 중국·싱가포르·대만·홍콩·코스타리카 등 5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었다.

2014년 7월 EGA 협상 참가국들은 협상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공동선언을 하고 사전협상(pre-negotiation) 개시에 들어갔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전협상을 통해 관세감축 대상 품목이 검토됐는데, 이를 통해 10개 환경 카테고리의 580여 개 품목(HS 6단위)으로 집계된 통합리스트가 회람됐다. 10개 카테고리는 대기오염 관리, 고체·유해폐기물 관리, 폐수 관리·수처리, 환경 복원·정화, 소음·진동 제거, 청정·재생가능에너지, 자원효율성, 환경모니터링, 친환경제품 등이다(구체적인 품목 내용은 별도 표에 제시).

참가국들은 이번에 회람된 통합리스트를 기초로 2015년 5월부터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본격 협상 단계에서는 환경적 신뢰성과 참여국 지지도를 검토해 무관세화 대상 품목을 선별하게 된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금년 말 제10차 WTO 각료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 당사국회의 때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수출 중 환경상품 6.9% 차지…EGA 기대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개최된 제 3차 사전협상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해 왔다. 우리나라가 국제 통상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상

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14년 11월에야 협상 전 절차를 모두 완료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 편의성이 인정되고 우리 산업 경쟁력과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43개 품목이 선정돼 리스트가 제출됐다. 이에는 LED 조명, 탄소섬유,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손건조기, 리튬이온축전지, 메탈실리콘 등이 포함돼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세계 환경상품 교역액은 2002년 6,514억 달러에서 2012년 1조9,339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2년 3.7%에서 2008년 4.9%, 2013년에는 6.9%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EGA 협상에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6.9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WTO EGA 협상은 세계 환경상품 시장에서 새로운 교역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 품목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환경산업의 전반적 발전과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의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고안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❷

세계의 FTA: ⑯MERCOSUR의 FTA

역내산업 보호 위해 FTA 소극적... 최근 EU와 협상 재개하며 활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마무리짓고, 이제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나서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FTA 체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공동체인 MERCOSUR의 FTA 추진동향을 살펴보자 한다.

MERCOSUR
남미공동시장
(Southern Common
Market)을 뜻하는
스페인어(Mercado
Común del Sur)
약어로, 국내에서는
주로 '메르코수르'라고
불린다.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공동체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MERCOSUR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LAFTA(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중남미자유무역연합), 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중남미통합연합) 등 지역통합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던 중 199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중심이 돼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아우르는

MERCOSUR를 창설(베네수엘라 2012년 가입, 볼리비아 2014년 가입)했고, 이들은 회원국 간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관세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역외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FTA 협상을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각종 경제시스템을 통합하는 공동시장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실질적 FTA는 2009년 이스라엘과 시작

MERCOSUR는 FTA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역내통합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17일 아르헨티나 파라나 시에서 열린 제47회 MERCOSUR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왼쪽부터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오라시오 카르테스 파라과이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EU, GCC 등 다양한 국가와 FTA를 추진했으나 중단됐고, 한동안 FTA 체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MERCOSUR와 FTA를 발효한 국가를 살펴보면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FTA만 MERCOSUR가 발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MERCOSUR 가 성립되기 이전에 CAN(Comunidad Andina de Naciones: 안데스공동체)의 회원국들과 맺은 FTA인데, 이전의 FTA를 MERCOSUR 차원의 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MERCOSUR의 FTA 추진이 활발하지 못했던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먼저, 역내 산업 보호에 민감하다. MERCOSUR 회원국들은 주로 자원부국으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신흥국들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FTA는 통상적으로 수준 높은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제조업 수준이 상당한 선진국에 시장을 개방하면 역내 국가의 제조업 기반이 훼둘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들은 농업 강국인 만큼 농산품 수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협상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MERCOSUR 가 상대국 농업 시장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원할 경우, 역내국의 공산품 시장을 충분히 열어야 한다. 그러나 MERCOSUR는 자국 공산품 시장 보호를 우선적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협상 시 상대국으로부터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를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최근 무역자유화 논의가 지속되며 FTA가 상품분야뿐 아니라 서비스·투자의 자유화 내용을 포함하게 됐지만, MERCOSUR 역내국들은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부담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MERCOSUR는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국가에 주목했다. FTA를 통해 농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MERCOSUR는 이들 국가와 교역이 활발하지 않아 FTA를 발효하더라도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MERCOSUR 와 FTA를 체결하며 양국 간 기술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MERCOSUR가 FTA 체결에 더욱 우호적인 입장 을 가졌다. 의약품, 우주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MERCOSUR의 FTA 추진 동향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리비아 FTA(1997년 2월 발효) • 콜롬비아 FTA(2005년 2월 발효) • 에콰도르 FTA(2005년 4월 발효) • 페루 FTA(2005년 12월 발효) • 이스라엘 FTA(2009년 12월 발효)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FTA (2010년 8월, 2013년 1월 이집트측 비준완료)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FTA(2011년 12월) 			
협상중	• EU FTA	• SICA FTA	• 터키 FTA	• GCC FTA

*SICA(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중미통합체제(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를 뜻하는 스페인어 약어로,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벨리즈의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oman·바레인의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MERCOSUR 역내국들의 기술 발전을 기대한 것이다. 따라서 MERCOSUR는 전체품목의 96.6%, 이스라엘은 90.2%에 대한 품목의 관세를 양허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집트와의 FTA에서도 MERCOSUR의 특징이 드러났다. MERCOSUR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집트와의 FTA에서는 상품시장만을 개방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이집트는 MERCOSUR 측에서 우려할 만큼 산업발전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FTA 체결이 이뤄질 수 있었다.

칠레·페루에 자국받아 최근 개방정책으로 선회

최근 MERCOSUR는 FTA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중단됐다가 2010년 재개된 EU와의 FTA 협상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직 눈에 띠는 진전은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타결할 것이라 밝히며, 정기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을 둘러싸고 경쟁구도에 있던 태평양동맹과도 경제교류 확대를 넘어서 두 경제블록 간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도 했다. 더불어 페루, 칠레 등 주변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해 나가고 있는데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회원국들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FTA 체결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와 국내 방송생태계 판도 변화

미디어 시장 개방 본격화... 직접 경쟁 통해 수준 높일 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됐던 배경에는 1986년 시작해 1994년 마무리 된 우루과이아운드(UR)가 있다. 이전까지의 통상체제는 '상품'의 교역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반면 이때부터 무형의 상품인 '서비스' 또한 국제통상규범 하에 놓이게 됐다. 이는 1980년대 중반까지 전례 없이 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했고 향후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되면서 이를 다룰 보편적 규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DDA(도하개발언제) 및 FTA 등의 다자간·양자간 통상협상은 상품과 서비스를 두 축으로 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 및 이동수단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서비스 교역이 갖는 의미와 위상이 더욱 제고됐다.

WTO 체제하에서는 부속서 1B(Annex 1B)¹⁾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토대로 서비스 무역을 다루고 있다. FTA에서는 상품에 대한 양허와 협정내용을 기술한 후 서비스 무역에 대한 협정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WTO의 '방송통신 부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에서는 방송분야를 다루지 않고 있는 만큼²⁾ FTA별로 관련 내용을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해당분야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점해 한국이 타결·발효한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내 일부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한·미 FTA 4년차, 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시동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지난 3월 15일 발효 3년째를 맞이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 미디어기업들이 국내 방송시장에 대해 합법적인 진출과 100%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졌다.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 등을 제외한 일반채널에 대해 기존 49%의 투자만 허용했던 3년간의 유예가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폭스, 디스커버리, 디즈니 등의 메이저 미디어 그룹들이 이미 국내시장에 진출해있다는 사실과 한국인들에게 자국 콘텐츠의 인기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현실 등을 고려해 미국이 국내 방송시장 진출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었으나, 지난 4월 1일 미국 타임워너 계열의 터너엔터테인먼트워克斯 코리아가 카툰네트워크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카툰네트워크는 1992년 개국한 주요 애니메이션 채널로서 기존에는 국내 중앙일보의 방송법인 중앙방송이 지분의 51%, 미국 터너엔터테인먼트 네트워克斯 코리아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미국 타임워너가 100%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아직 FTA가 발효되진 않았지만,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내 방송시장에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식의 공격적인 채널 인수 및 직접운영 사례보다는 국내 우수 제작진 스카우트, 공동제작,



제작비 투자 등의 방식으로 국산 방송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문화산업 육성 의지 천명과 한류 콘텐츠의 가치 제고로 한국 방송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했고, 한·중 FTA를 통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미 '별에서 온 그대'의 장태우 PD, '시크릿가든'의 신우철 PD, '최고의 사랑'의 홍미란, 홍정은 작가 등 제작진의 스카우트가 현실화 됐고 인기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로 유명한 초록뱀미디어와 같은 유망기업도 중국에 인수된 지 오래다. 이를 통해 중국의 콘텐츠 제작 역량이 곧 한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리에 이미 방영됐거나 현재 방영되고 있는 중국판 '나는 가수다(我是歌手)', '아빠 어디가(爸爸去哪儿)', 그리고 '런닝맨(奔跑吧, 兄弟!)' 등은 장르를 초월한 중국발 투자바람의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제작 능력 강화해 '제 2의 한류' 만들어야

FTA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방송생태계 판도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직접 경쟁의 환경 속에 국내 콘텐츠 제작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국내 정서에 알맞은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과의 전쟁에 앞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신료와 엄격한 광고 규제 등 내부적인 문제들이 선형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본력과 규모, 인력 등을 키우는 동시에 외국자본에 대한 의지 없이 자체 제작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관련 FTA 조항들을 이해하고, 공동제작 및 문화협력을 통한 '주고 받기(give-and-take)' 방식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제 예전 한류의 영광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한류, 제 2의 한류를 통한 국내 방송시장 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FTA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시장의 개방은 현실화되고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분야를 막론하고 경쟁은 당연한 것이며 예측했던 사실이다. 최근 '한미 지상파방송 진흥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같은 협력사례에서 보듯 시장개방으로 가까워진 두 시장에서는 경쟁보다 서로 협력하며 공동발전과 번영으로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❷

대상국 FTA 체결 시기	EU 2011년 7월 1일 발효	미국 2012년 3월 15일 발효	중국 2014년 11월 10일 협상 타결
방송시장 관련 일부 주요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서비스(방송서비스 포함)를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대신, 별도의 '문화협력의정서'를 통해 '공동제작' 등 구체적인 이슈를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일반채널(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등 제외)에 대한 지분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도록 허용(기존에는 100분의 49 초과 불가) 수입콘텐츠 1개 국가 퀀터 제한 80%로 완화(기존 60%) 일반채널 내 국산프로그램 편성 규제 완화(영화 기준 25%→20%, 애니메이션 기준 3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방송용 애니메이션 및 영화 등의 공동제작 장려

1) 상품의 경우는 부속서 1A, 저적재산권은 부속서 1C에서 규범.

2) Scope: (b) This Annex shall not apply to measures affecting the cable or broadcast distribution of radio or television programming.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⑫도자기제품

한·EU 및 한·미 FTA 관세인하 폭 커… 유럽·미국 수출 크게 늘어

도자기 산업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돼 온 전통산업이다. 근래에는 각종 고급 도자기류와 산업용 도자기류가 생산·공급되면서 크게 기술발전이 이뤄진 분야이기도 하다. 한·EU FTA,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잇따라 체결한 여타 FTA로 인해 국내 도자기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오늘날 도자기제품은 종래의 식기류 등 일상용품 및 건축 재료뿐만 아니라, 소득 증대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장식용으로도 수요가 많아졌고, 여러 가지 특수한 성질을 이용해 전기, 전자, 통신, 운송 등 각종 공업 분야에까지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대량생산 방식에 의해 제조된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도자제품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도예가의 작가정신이 반영된 공방 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소비자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EU FTA로 도자기류 12% 관세 철폐
세계 최고급 백화점으로 명성이 높은 영국의 한 백화점에는 한국 A기업의 고급 브랜드 도자기를 파는 단독매장이 있다. 이 업체의 매출 중 10%가 EU 수출에서 나온다. 한·EU FTA가 체결되기 전 현지 기본관세율은 12%였으나 한·EU FTA 체결로 특혜관세적용을 통한 관세절감효과를 볼 수 있어서 한·EU FTA 체결의 수혜기업으로 떠올랐다. 더불어, 원가절감도 할 수 있었다. 이 업체는 원료 대부분



01 세면대, 소변기 등 위생용 도자기제품은 HS6910호에 분류된다. 02 자기제의 식탁 및 주방용품 등은 HS6911호에 분류된다. 03 도자제(식기·토기·도기)의 식탁 및 주방용품은 HS 6912호에 분류된다. 04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물품에 한정해 골동품으로 인정되는 도자기는 HS9706.00호에 분류된다.

을 EU에서 수입하는데 소뼈가 대표적이다. 소뼈를 고아 먹는 한국에선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EU FTA 체결로 소뼈가 이전보다 싼값에 들어와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

한·미 FTA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도자기 종류별로 6~25%씩 부과되는 관세가 폐지되거나 인하됐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주 지역으로 자체 브랜드는 물론 유럽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겨냥해 한국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 물량이 늘어날 경우 중남미와 남미 쪽 물량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FTA 체결 결과 도자기제품은 원가절감효과와 수출증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됐다. 최근 유럽과 일본산 고가 브랜드와 아세안 국가 및 중국산 저가 제품의 범람 속에서 '샌드위치' 상황에 몰려 있던 우리 토종 생활 도자기 업체들로서는 FTA로 인해 오랜 가뭄 끝 단비를 만난 격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자기제품은 HS69류에 분류

도자기 제품은 일반적으로 점토 등과 같은 무기질재료와 기타 재료를 상온에서 성형해 구어 만든 제품을 말한다. 구운 온도에 따라 토기, 도기, 자기 등으로 불리어지는데, '도자기'란 이들의 총칭이다. 도기는 점토를 완전 유리질화 한 온도보다 낮은 1,100°C 정도에서 구운 것으로 자기보다 흡수성이 높다. 자기는 1,300°C 이상에서 구워지는 것으로 거의 완전히 유리화돼 투광성이 있으며 때리면 맑은 소리가 난다. 또 같은 자기에서도 성형법과 소성법 등에 차이가

있어 각각 특징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도자기 제품으로는 커피세트, 접시 등 식기, 장식품 등의 생활도자기 및 위생도기나 타일 등의 건축도자기, 이화학용 도자기, 애자류 등의 공업도자기, 그리고 청자, 백자, 분청사기의 전승도자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자기제품은 HS69류에 분류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HS6904호에 건축용 벽돌 및 블록 등이, HS6909호에는 이화학 및 공업용의 도자기제품이, HS6910호에는 세면대, 소변기 등 위생용 도자기제품이 분류되고 있다. 특히, 생활도자기 제품의 HS 품목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자기제의 식탁 및 주방용품 등은 HS6911호에 분류되고, 그 밖의 도자제(식기, 토기, 도기)의 식탁 및 주방용품 등은 HS 6912호에 분류된다. 그리고 장식용 제품은 HS6913호에 별도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 의해 주로 거래되고 있는 HS6911.10호에 분류되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이나 주방용품을 중심으로 하는 도자기제품의 원산지기준은 한·칠레, 한·미, 한·페루, 한·호주 FTA의 경우 HS 2단위로부터 변경이 이뤄져야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CC 기준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FTA에서는 HS코드 4단위로부터의 변경이 이뤄지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CTH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골동품의 경우는 어떠할까? HS 품목분류상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물품에 한정해 골동품으로 인정되는 도자기는 HS9706.00호에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 후 100년 초과 여부에 대한 확인과 공신력 있는 인정기관이 매우 중요하다. ☞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제3국 송장 발행

서류상 거래보다 실제 물품의 이동이 기준

얼마 전 'FTA 콜센터 1380'으로 상담이 들어온 내용으로, 영국에서 제조한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되는데 미국에 소재한 수출자가 한국의 수입자 앞으로 송장을 발행한 건의 FTA 적용 가능성에 대한 문의였다. 이는 무역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행해지는 3국 간의 거래로서, FTA의 기본원칙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형식상의 거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뤄졌지만, 상품이 실제로 전달된 한국과 EU의 거래로 보는 것이다.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FTA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거래당사자 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3국 거래 시 수입국에서는 제조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제3국의 거래당사를 수출자라 지칭한다. 그러나 FTA에서 수출자라 함은 FTA 체약국에 소재한 '인(人)'으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원산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즉, 실제 물품을 제조하고 선적한 영국의 제조업체가 FTA 요건 상의 수출자에 해당된다.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거래당사자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이 협정에 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원산지물품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뒤따른다.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순 제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가공이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돼야 한다. 해당 수입물품의 경우 한·EU FT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원산지물품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충족돼야 한다. 한국의 수입자와 실제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로서, 미국의 수출자 또한 한·미 FTA 하에서 거래당사자 요건에

는 충족이 되나, 수입물품이 최종적으로 제조된 곳이 영국 이므로 미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는 불가능하다.

Order) 등 해당 제품이 상세하게 기재된 상업서류 상에 기재하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체약국간에 직접 운송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각 협정에서 정하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FTA 적용이 불가하다. 본 거래의 경우 제3국인 미국의 수출자는 서류상으로 개입돼 있을 뿐, 실제 물품은 영국에서 선적돼 한국으로 직접운송 돼야 FTA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비당사국을 경유하거나, 비당사국에서 환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B/L(Bill of Lading), AWB(Air Way Bill)과 같은 운송서류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적법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수출자가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원산지신고문안¹⁾을 기재하면, 이것이 원산지증명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 건과 같이 미국의 수출자가 영국에서 발행한 송장을 대체해 한국의 수입자에게 재발행하는 거래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EU FTA 상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려면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더라도, 실제 물품을 제조하고 선적한 국가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즉, 미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송장에 그러한 신고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은 거절된다. EU에서 제조되는 물품으로 제3국 송장이 발행되는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 상의 신고문안을 기재해 원산지신고서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외에도 B/L 등의 운송서류, 인도증서(Delivery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 여부

한·EU FTA에서는 단일 운송서류에 의해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수입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영국의 수출자는 한국의 수입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반드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해 원산지신고서 상에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신고서가 적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간혹, EU 제조자의 인증번호를 알기 때문에 제3국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송장에 해당 인증번호를 기재한 신고문안을 기재하면 적용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또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서류로서 '판매자(Seller)' 또는 '선적자(Shipper)'를 제3국 수출자로 기재해 발급한다 하더라도, 원산지신고문안의 작성장소 및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등을 통해 인증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러한 사실을 관련 서류들로써 세관 담당자에게 충분히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3국의 수출자가 개입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FTA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래 관계가 복잡하거나 서류상의 모호한 사항들로 인해 앞서 언급한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 사전에 세관의 견해를 확인하거나, 관세사 등 FTA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자칫 FTA 협정적용이 배제될 위험을 조기에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본 건의 경우 한·EU FTA를 바탕으로 설명한 것임으로, 타 협정 적용 시에는 해석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1)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인증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한·중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 제도 알아보기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원칙... 사후검증은 직간접 방식 혼용

‘원산지 사후검증(Verification of Origin)’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다. FTA 원산지 사후검증은 검증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①수입국 세관이 자국의 수입자를 통해 수출자를 검증하는 ‘직접검증’과 ②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수출자를 검증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세관 등의 기관에서 원산지증명 자료를 검토해 발급하는 기관발급을 채택하는 FTA 협정에서는 주로 간접검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FTA 협정인 경우에는 직접검증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¹⁾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 담당하게 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내의 경우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중국의 경우 각 해관²⁾에서 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발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자료(소요원자료명세서, 거래증빙자료 등)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취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뒤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며, 자료도 기관에서 보관한다. 이런 기관발급의 특성상 사후검증도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간접검증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직접 현지를 방문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중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해선 협정문 제3장의 제2절 제3.23조(CHAPTER 3 SECTION B Article 3.23: Verification of Origin)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방법과 절차, 검증결과 통보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지방문 검증인 경우 반드시 수출국 세관과 동행하고 수출국 세관을 통해서만 어떠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증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산지증명자료의 보관기간은 다른 협정의 경우 보통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중 FTA의 경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³⁾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중 FTA의 경우에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한·중 FTA의 원산지검증에 대해 설명한다. 이하 한·중 FTA의 원산지검증에 대해 설명한다. ●

1) 한-EU FTA, 한-EFTA FTA 등은 자율발급이지만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 중국에서는 세관을 ‘해관’이라고 함.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한·중 FTA의 원산지검증

제3.23조 원산지 검증

-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차례대로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수입자로부터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의 요청
 - 수출 당사국의 세관당국에 대해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
 - 수출 당사국의 세관당국에 대해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 요청, 또는
 - 양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그러한 절차

1. 원산지 사후검증 방법

수입국 관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국에 수입된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수입자에게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수입자 서면검증)
- 수출국 관세당국에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간접검증)
-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해 검증하기 위해 수출국 관세당국에 요청(직접방문검증)
- 기타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합의하는 방법

2. 서면검증 절차(간접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을 하려는 이유, 원산지증명서 등 검증 요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 수출국 관세당국은 검증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명서 입증자료 등을 포함한 검증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출국의 검증결과를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지한다.

3. 방문검증 절차(직접방문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된 검증 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행 하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방문해 검증할 수 있다.

- 수입국 관세당국은 방문일 최소 30일 전에 방문검증에 대해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수출국 관세당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 수출국 관세당국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정한 방문검증 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방문검증을 동의하는 회신과 함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수출국 관세당국이 방문검증에 동의하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세관원의 동행 하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해 검증할 수 있다.
- 방문검증 전에 검증과 관련된 문제는 당사국의 관세당국끼리 상의해야 하고, 방문검증 과정에서 수입국 관세당국의 어떠한 요청도 수출국 관세당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 수입국 관세당국은 방문검증 결과를 서면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의 적격성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국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대우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추가 증빙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수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결정문을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 방문검증은 최종결정문 통지기간을 포함해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 방문검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전에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4. 특혜관세대우 중지 및 반출 허용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혐의나 수입금지, 수입규제 등이 없는 경우 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물품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5. 특혜관세 대우 거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 수입자가 수입국 관세당국의 정보제공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응(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 수출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절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검증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공된 검증 결과 또는 방문 검증 결과가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수입국 관세당국의 방문검증 요청을 수출국 관세당국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방문검증 절차에 따라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방문 검증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가서명된 협정문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학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⑦박태원의 '천변풍경'

1930년대 도시적 삶을 그린 모더니즘의 진수



‘천변풍경’은 아니네들이
청계천변 빨래터에 모여
와자지껄하게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떠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예전에 빨래터는
아니네들의 억눌린 심정을
토로하는 수다 장소이자
정보 교환의 미답이었다

청계천은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천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층민들이 모여들던 곳으로 서울 사람들의 가장 오래된 놀이터이자 빨래터였다. 박태원(1909~1986)의 소설 '천변풍경'은 바로 1930년대 후반 청계천을 배경으로 한 '도시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띄었다. 바로 청계천을 덮고 큰길을 낸다는 소문이 이 소설을 썼던 1936년에 벌써 회자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더구나 소문을 들으면, 뭐 청계천을 덮어버린단 말이 있지 않아? 위생에 나쁘다던가….” “그거, 다 괜한 소리… 덮긴, 말이 그렇지. 이 넓은 개천을 그래 무슨 수로 덮는단 말이 윤? 온 촌…….”

필자의 고향은 합천인데 1980년대에 합천호가 건설되는 바람에 수몰됐다. 그런데 청계천을 덮는다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문득 생각났다. 즉 '합천댐 조성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어왔는데 언젠가는 댐이 건설된다'라는 소문이었다. 1962년에 청계천의 '오래된 소문'이 현실화됐듯이 합천댐의 '오래된 소문'은 전두환 정권에서 현실화됐다.

다큐 기법으로 엮은 50개의 이야기

'천변풍경'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박태원이 1936, 1937년 각각 '조광'지에 두 번에 걸쳐 연재한 작품을 장편으로 묶은 것이다. 박태원은 불과 서른 살에

'천변풍경'과 또 다른 작품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출
간했다. 두 작품 모두 모더니즘의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천변풍경'은 제1절 '청계천 빨래터'에서 시작해 제50절 '천변풍경'으로 끝나는데 중심적인 주인공이 없이 모두 30여명의 등장인물에 50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박태원은 1930년대 천변을 중심으로 도시인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과 도시적 삶의 새로운 사회풍토를 조명하고 있다. '천변풍경'은 흔히 '카메라의 눈'이라고 하는 영화 기법을 차용해 다양한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카메라의 눈'의 사용은 작가의 눈에 띠는 선택이나 배열보다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박태원은 이 천변을 마치 요즘의 TV 프로그램인 '다큐멘터리 3일'을 연상시킬 정도로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사람들은 살아 보겠다고 이 도시로 몰려오는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여기서 죽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서두로 시작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1910)’는 근대 유럽의 최초 도시 소설이다. 당시 작가들은 대부분 귀족이나 구시대를 그려내고 있었는데 말테가 처음으로 근대 도시와 죽음의 문제를 형상화했다. 박태원의 ‘천변풍경’과 또 다른 작품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우리나라에서 본격 시도된 도시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이발소 사환인 재봉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작가 자신이 ‘서술 자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작품의 주요 자스는 천변에 위치한 빨래터와 이발소, 카페이다.

먼저 빨래터는 도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하층민들의 정체된 삶을 드러내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대감을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 요새, 웬 비웃(청어)이 그리 비싸우?” “아니, 얼말 주셨게요?”

‘천변풍경’은 아낙네들이 청계천변 빨래터에 모여 악자 지껄하게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떠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예전에 빨래터는 아낙네들의 억눌린 심정을 토로하는 수다 장소이자 정보 교환의 마당이었다. 여기서도 그러한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발소는 재봉이의 관찰 장소로 설정 돼 있다. 이발소는 빨래터에서 이야기되기 어려운 종산총 남자들의 허위의식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재봉이의 관찰행위를 통해 묘사되는 포목점 주인의 허위의식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가 남의 앞에서 즐겨 꺼내보는 그 시계는 참말 금시
예지만, 역시 십팔금인 것같이 남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
라고 있는 듯싶은 그 시곗줄이, 사실은 오금에 지나지 않
는다는 것을, 이발소 안에서의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는 소
년은, 그의 태도와 걸음걸이가 점잖으면 점잖을수록, 더욱
이 속으로 우스웠다.”

천연은 하층민들의 인간애 넘치는 '이상적 공간'

카페는 빨래터와 이발소와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달리 제시되고 있다. 빨래터와 이발소가 잘못된 세태를 폭로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면 카페는 하층민들이 가지고 있는 성실한 삶의 자세와 상호간의 연대감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 즉 카페 여급 기미꼬를 중심으로 하층민들의 성실한 태도와 따뜻한 인간애가 드러난다. 기미꼬와 하나님, 금순이가 함께 사는 여성공동체(하나꼬와 기미꼬는 카페여급일을 하고 금순이는 밥 짓기 등 생활을 담당한다)는 기미꼬에 의해 기획된다. 인신매매범에 의해 끌려와 하숙집에 머물고 있는 금순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 기미꼬가 손길을 내민 것이다. 기미꼬는 속악한 근대에서 타락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인물이지만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따뜻한 휴머니티를 유지하는 인간형으로 제시된다. 말하자면 맘씨 좋은 '왕언니' 쯤으로 말이다.

박태원이 이 작품을 통해 천변을 하층민들의 인간애와
현대감이 넘치는 곳으로 이상적 공간으로 형상화한 것이
마음, 기미꼬는 그러한 천변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다. 박
태원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도시민들의 삶의 복원은 바
로 모성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이와
달리 만들 아버지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
이면서 아내에 대한 맹목적이고 이유 없는 횡포를 저지르
는 남편으로 제시되고 있다

“어디 갔다 오든, 아년아, 니가 무슨 상관야?” 말은 오직 한마디로, 다음에 무수한 주먹과 발길이, 가엾은 여인의 몸 위에 떨어졌다. 그의 모습은 구시대의 불건전한 생활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몰락해 가는 부권 사회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만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대낮의 햇살이 따뜻한 것 같기도 하다'로 끝나는 '천변풍경'의 마지막 대사처럼, 이 봄날이 가기 전에, 따뜻한 햇살을 안고 청계천을 한번 거닐어보자. 그런데 청계천변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던 그 시절이 왜 이리도 그리울까. ☺

FTA NEWS

산업부, '新FTA 추진전략' 발표

신흥국 중심의 'FTA 제2라운드'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전략적 FTA 추진'의 일환으로, 향후 세부적 FTA 정책 방향을 담은 '新FTA 추진전략'을 4월 29일 발표했다. 이는 2013년 6월 발표한 '新통상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국가별·지역별 FTA 세부 추진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FTA 등 5건의 FTA를 신규로 타결하면서 미국·EU·중국 등 거대경제권 및 선진국과의 FTA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의 FTA 추진 방향을 담은 '新FTA 추진전략' 수립이 요구됐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FTA 미체결 국가는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등 3개국이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인접국들도 최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체결 FTA를 통해 구축된 FTA 플랫폼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의 FTA 추진 상황

- **중국:**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60개국을 대상으로 FTA, 인프라, 무역 원활화, 금융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대외 경제협력 방안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추진
- **일본:** 광역 FTA 연계망 구축을 목표로 TPP, 일·EU FTA 추진 등 2018년까지 FTA 교역 비율 70% 확대 추진

이 추진 전략은 3대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TPP·RCEP 등 메가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

미국, EU, 중국 등 3대 거대경제권과의 양자 FTA 체결 이후, TPP·RCEP 등 메가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메가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미 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inchpin)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 상황 및 우리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대응할 계획이다.



②기체결 FTA 개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인도 등 활용도가 낮은 FTA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여타 기체결 FTA의 경우도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③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향후 FTA 대상국은 경제적 지표(GDP·실행관세율·인구 등), 상대국의 통상정책, 국제 분업구조에서의 위치 및 국제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신규 FTA 대상국은 권역별로 다음과 같다.

권역별 신규 FTA 추진 계획

중남미	중미 6개국*, 에콰도르*, 멕시코*, MERCOSUR*
중동	요르단, GCC*, 이스라엘* 등
중앙아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아프리카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는 공동연구 원료 국가

원산지관리사 응시지역 확대

서울·대전 이어 부산 실시…영남권 응시자 증가



관세청은 3월 28일(토) 제14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을 서울·대전·부산으로 확대 시행했다. 서울에서만 시행하던 이 시험을 2013년부터 대전으로 확대한 결과, 응시자 및 합격자가 크게 증가해 FTA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번에 부산까지 확대한 것은 부산·영남권 거주자들의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총 응시자 959명 중 202명(21%)이 부산지역에서 응시했다. 이로써 지방 거주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감소해 해당 지역의 응시 및 합격자가 대폭 늘어나 지역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능력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FTA 원산지 실무전문가 육성을 위해 원산지관리사 자격제도를 2010년에 도입(2012년 국가공인자격 획득)해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쳐 2,170명의 원산지관리사를 배출했다. 또, 2013년부터 원산지관리사 신규채용 시 채용보조금 지급이 가능(연 1,080만 원)하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오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시험장소를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 주요 업종 간담회 개최

정식서명 앞두고 정부·업계 간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1일(화) 한국무역협회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주요 업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기계,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 30여 개 업종 관계자들과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한·중 FTA 실질 타결과 올해 2월 가서명 이후 개별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왔다. 이에 한·중 FTA의 정식서명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 업계 간 소통을 다시 한 번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호 이익의 균형을 도출해야 하는 협상의 특성상 모든 세부 품목별 이익균형을 정확히 맞추기는 한계가 있으나,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의 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준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과장이 '한·중 FTA 주요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분야별 협상결과 및 서명·비준 등 향후 절차를 설명했다. 발표 후 이어진 종합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주요 업종 단체 관계자들이 한·중 FTA 관련 기대효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개진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Information

2015 'OK FTA 컨설팅' 사업 실시
중소·중견기업 250개 대상... 현장방문 통해 FTA 애로 해소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OK FTA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FTA 전문가들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FTA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것이다.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에 종합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자율적 FTA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내용은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의 전 과정이며 구체적으로는 △업체별 주요 수출품 품목분류 및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빙 작성 지원 및 유자관리 △FTA 원산지검증 사전 대비 △FTA 활용 업무매뉴얼 제공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지원 등이다.

사업신청 방식은 다음과 같다. 문의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80)으로 하면 된다.

구분	내용	
지원자격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제외) 250개사 내외	
지원일수	8~10MD(MD: Man-Day의 약자로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것)	
기업분담금 (차등 적용)	직전년도 매출액	기업분담 비율(금액)
	• 10억 원 이하	• 0%(무료)
	•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10%(40만 원)
	• 5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 20%(80만 원)
• 500억 원 초과	• 30%(120만 원)	
모집기간	2015년 6월 30일(화)까지 ※적격 업체 선착순(접수 기준)으로 지원기업 선정(조기마감 주의)	
신청방법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i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첨가신청서 1부, 자재명세서(BOM) 1부, 사업진행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제품 카탈로그 1부	

※2015년 국고지원 타 기관 유사사업의 경우에도 'FTA컨설팅사업 운영기관 공동지침'에 따라 유사한 기업분담금이 적용됨.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함께하는 FTA'를 읽고 FTA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의 수출입만 무역을 통하는 줄 알았는데 서비스, 투자 분야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니 FTA의 가능성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

김동건 부산광역시 서구 해동이로

'한·중 FTA와 함께 뛴다—예림당' 기사를 통해 출판업계에서도 FTA의 영향이 미치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FTA를 통해 더욱

발전되어 많은 이윤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혜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할랄(Halal)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도 우리가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아주 좋았습니다.

안종성 전남 화순군 능주면 죽수길

4월호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에 소개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고, 딸과 함께 보려고 예매했습니다. 완성도 높은

멋진 공연일 것 같은 기대가 큽니다.

항상 좋은 문화소식을 전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강호우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한·중 FTA와 함께 뛴다'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중국시장으로 콘텐츠를 수출해 성공한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고, 그 기사를 읽다보니 도전 정신이 새롭게 불타올랐습니다. 한·중 FTA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한 전략을 서둘러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혜린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新GO! 튼튼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시작,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10
- 팩 스 02-2110-0678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정방지·행정판단·제도개선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Center for Reporting Public Subsidy Fraud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제공해 제공해